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3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7조의2의 개정('13. 9. 6.)으로 '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'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, 사문화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.

2) 입법예고('21. 4. 8.~4. 28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으로,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이한진(02-2133-2344)